

자원순환성과관리제도

자원순환 목표설정

2019. 10.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순서 -

1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2

자원순환 목표설정 원칙 및 방법

3

자원순환 목표설정(안)

4

향후 일정 및 질의응답



01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문제점(감량화제도)

- ✓ **기업의 자발적인 감량 목표 수립**
 - 달성이 용이한 수준의 목표 설정으로 감량의 실질적 효과 미흡
- ✓ **생산량 대비 원단위 발생량 지표 한계**
 - 단순 관리 체계의 통계 정보제공으로 지속적인 감량성과 관리 지표 역할 한계

개선방향

- ✓ **자원순환목표 부여 이행 관리 체계**
 - 정부에서 사업장별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 및 이행관리 방식
- ✓ **성과관리를 위한 새로운 지표**
 - 매립 제로화 달성을 위한 최종처분율과 실질적인 재활용(순환이용률)로 변경

목적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국가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시·도 및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에 **자원순환 목표**를 부여하여 자원순환 경제사회 실현

- ✓ 국가자원순환 목표(27년, 사업장폐기물): 순환이용률 83.1%, 최종처분율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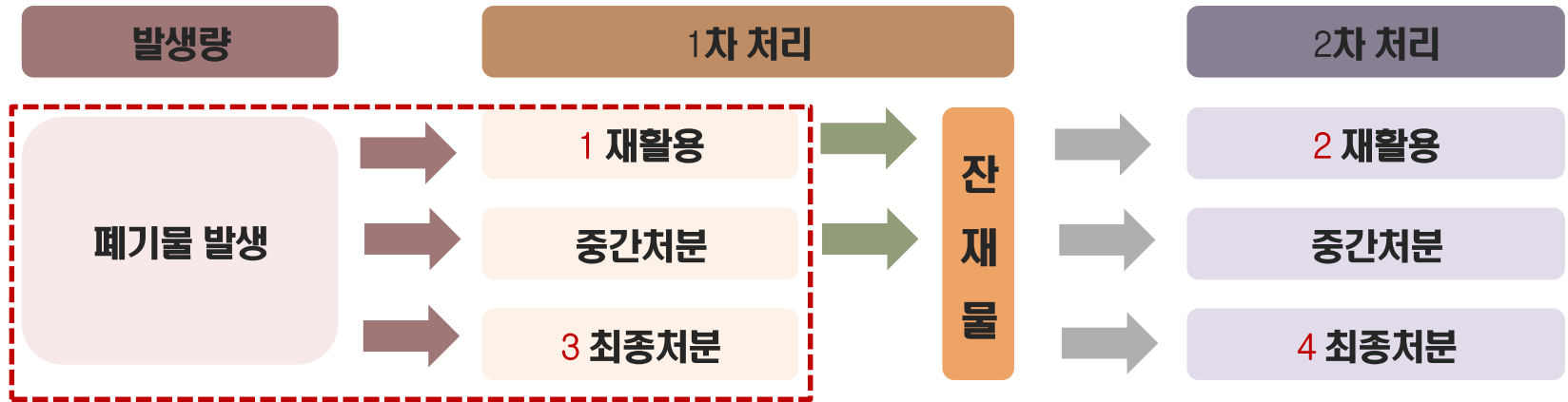
자원순환 성과관리 개념



자원순환 성과관리란?

- ✓ 자원순환성과관리란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분에 이르기까지 물질흐름에 따른 실질적인 재활용량과 최종처분량을 관리함으로써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증대시켜 최종처분을 억제하는 활동

(기존) 배출자관점의 처리방법에 따른 통계관리 방식 ⇒ (변경) 폐기물의 물질흐름에 순환이용성 관리



실질재활용량

1
재활용량 -
잔재물량

+

2
잔재물량 중
재활용된 량

최종처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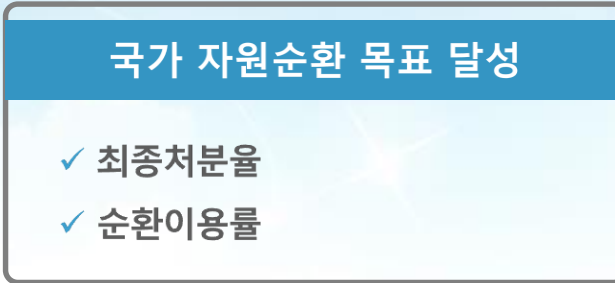
3
직접최종처분량

+

4
잔재물량 중
최종처분된 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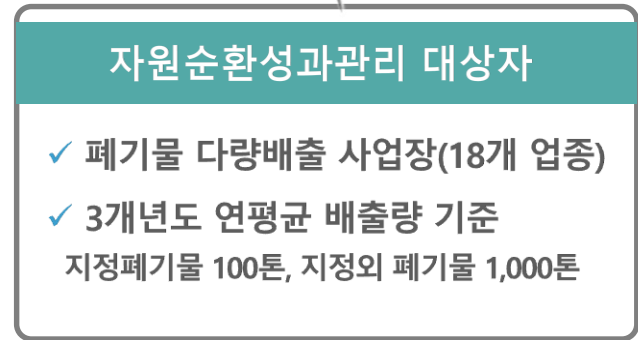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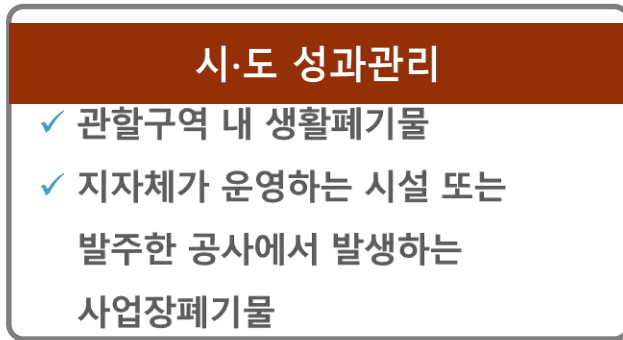
자원순환 성과관리 체계

국가목표 및 관할지역
여건 등 고려하여 자체
목표설정 관리



목표설정·부여
및 이행관리

국가자원순환 목표 및 자원순환 여건 등 고려



자원순환 성과지표

$$\checkmark \text{ 최종처분율(\%)} = \frac{\text{최종처분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checkmark \text{ 순환이용률(\%)} = \frac{\text{실질재활용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text{폐기물 발생량(톤) + 순환자원 인정량(톤)}} \times 100$$

※ **현행, 폐기물 감량지표인 원단위 발생량은 보조지표로서 지속적으로 활용**

기관별 역할분담

기관별 역할 분담

환경부

- ✓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지침 제·개정
- ✓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평가
- ✓ 목표 우수이행 지자체 및 성과관리대상자 인센티브 제공
- ✓ 이행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등

- ✓ 성과관리대상자 선정·공고
- ✓ 성과관리대상자 목표 설정 및 관리
- ✓ 성과관리대상자 추진실적 검증 확인 및 평가
- ✓ 현장조사, 기술진단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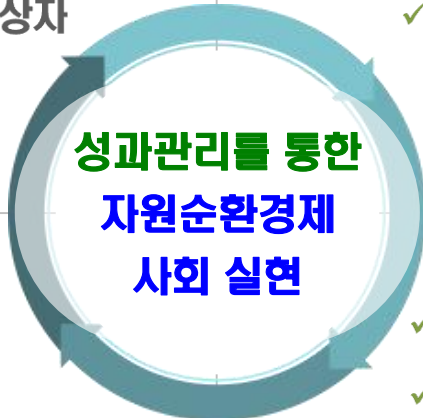
한국환경공단

지자체(시·도)

- ✓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이행
- ✓ 자원순환 추진실적 제출
- ✓ 자원순환 목표 협의 조정 등

- ✓ 자원순환 실적자료 제출
- ✓ 자원순환 목표 이행계획 작성 및 이행
- ✓ 자원순환 목표 이행실적 제출
- ✓ 기타 제도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성과관리대상자



성과관리를 통한
자원순환경제
사회 실현

성과관리제도 운영 절차



- ✓ 이의신청 : 대상자 공고, 자원순환 목표에 대하여 30일 이내 이의 신청 가능
- ✓ 목표 협의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자 단체 상호 협의
- ✓ 자료 제출 : 이행계획, 이행실적 등 제출자료는 자원순환정보체계를 이용 제출

추진 경과

- 16. 5 :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공포
- 17.12 :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 제정 공포
- 17.12 :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18. 6 : 2018년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대상자 선정 · 공고
- 19. 3 : 2018년도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제출
- 19. 4~6: 2018년도 성과관리대상자 실적자료 검증
- 19. 8 : 2020년도 자원순환 목표 관리계획 수립
- 19. 9 : 2020년도 자원순환 목표 설정 부여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VS 자원순환성과관리 제도

사업장 폐기물 감량화

- ✓ 폐기물 발생억제, 공정개선 등을 통한 원천 감량 (사전감량)
- ✓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
- ✓ 사업자의 자발적 목표 설정 이행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7항

목적

대상

방법

근거

자원순환성과관리 제도

- ✓ 물질흐름 관리를 통한 순환이용 극대화로 매립 제로화 (사후감량)
- ✓ 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자, 시·도
- ✓ 정부에서 목표 부여 및 이행
- ✓ 자원순환기본법 제16조

☞ 사업장폐기물감량지침 폐지 행정예고('18.11.12)

02 자원순환 목표설정 원칙 및 방법



목표설정 원칙

목표설정 기본 원칙/ 설정 절차

- ✓ 기본원칙 :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최종적으로 국가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
- ✓ 다음연도 자원순환 목표는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적용
- ✓ 기준실적이 국가목표를 달성한 경우 기준실적을 유지하도록 목표 설정
다만, 특정 폐기물이 업종 평균 실적 미만인 경우 이를 고려하여 해당 기준실적보다 향상된 수치를 목표로 설정할 수 있음



설정절차



❖ **기준실적** : 성과관리대상자의 최근 3개년도 연평균 자원순환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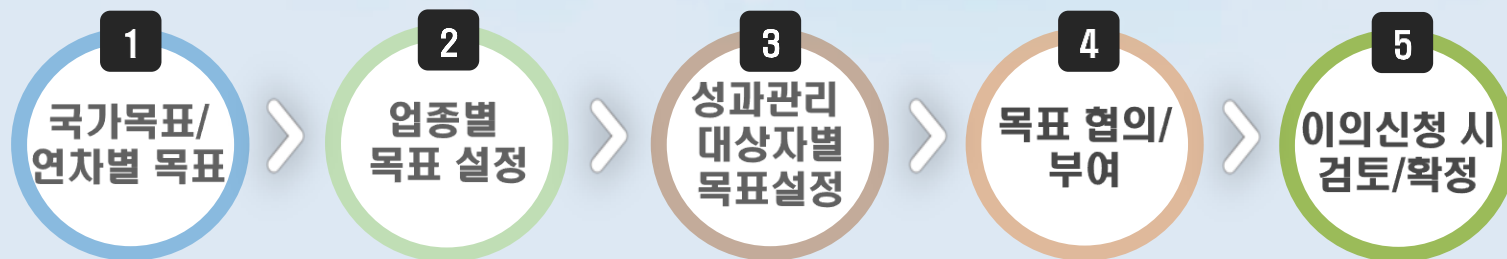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시 고려사항

- 국가자원순환 목표
- 국가 자원순환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계획
- 업종별 폐기물 종류별 최종처분 및 순환이용 현황
- 성과관리대상자의 최근 3개년간 자원순환 실적 추이
-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여건(폐기물 특성, 시장상황 등)
 -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특성 및 처리현황
 -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별 처분 사유
 -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별 처리비용
 - 사업장의 기술적·재정적 여건
 - 폐기물처리업체 현황
 - 폐기물 종류별 재활용 시장 여건
 - 그 밖의 성과관리대상자별 목표 설정을 위해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목표설정 방법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방법

- ▶ Top-Down 방식으로 사업장별 목표를 부여, 최종적으로 국가자원순환 목표 달성 추진



- ▶ 국가목표 기 달성 사업장과 미달성 사업장을 구분하여 Two-Track 방식으로 목표 할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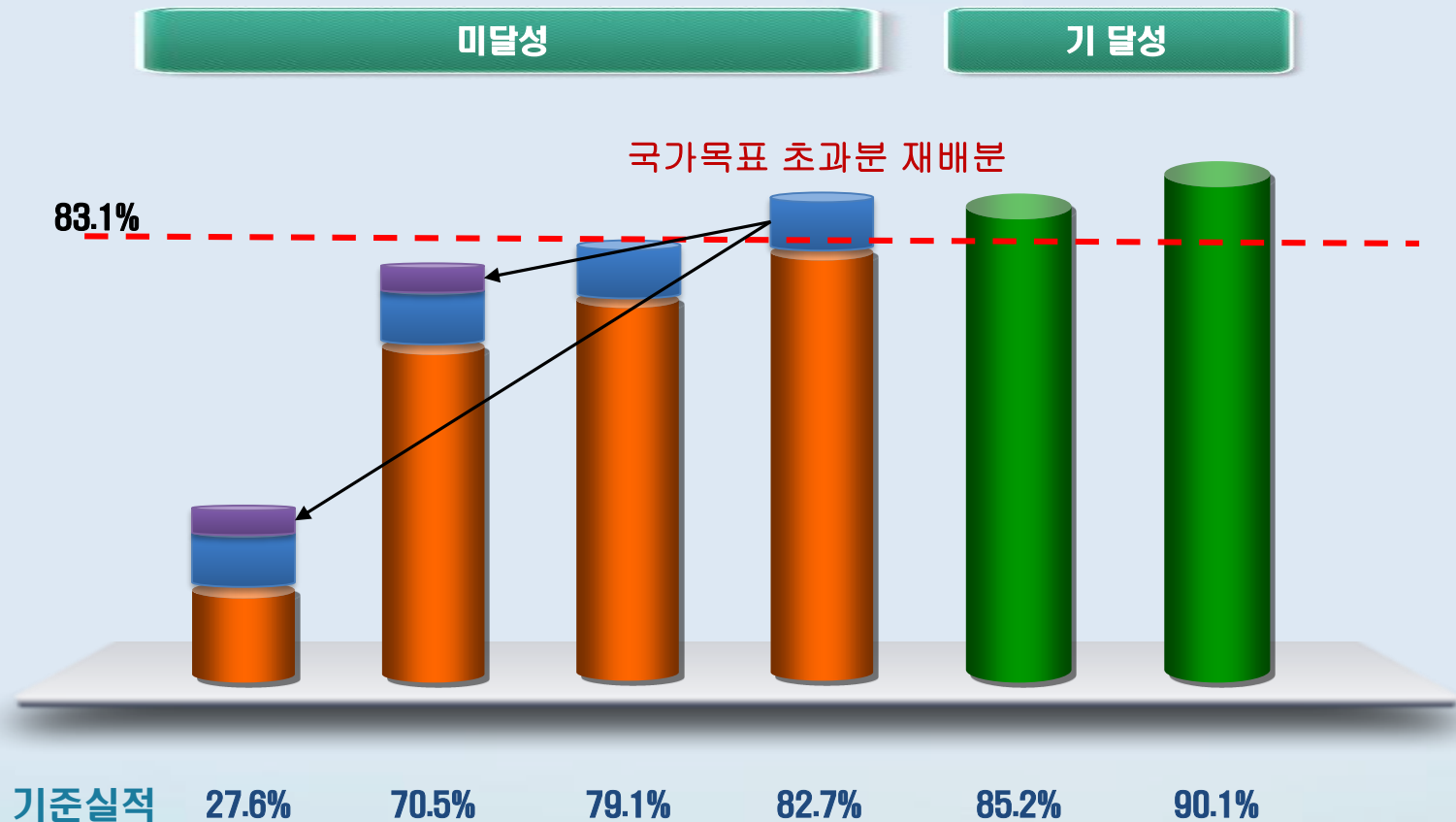
국가목표 달성 사업장	국가목표 미 달성 사업장
기준실적 유지하되, 업종 평균 미만인 폐기물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세분류 업종별 인상을 및 성과관리대상자별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목표 부여

- ※ 성과관리대상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업종을 **세분류 업종**으로 세분화하여 **업종별 특성 차이를 최대한 반영**

- ▶ 목표를 미 달성할 경우 미달성부분을 국가자원순환 목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연도 목표에 가산하여 목표 부여

목표설정 방법

- ▶ 업종별/대상자별 목표 할당 시 **국가목표(83.1%, 3.2%)를 상한선으로 설정**, 이를 초과하는 경우 타 업종/동일업종 내 타 업체에 재할당하여 부담 집중 방지



03 자원순환 목표설정(안)



목표설정 개요

자원순환 목표 부여 대상

➤ 18년 성과관리대상자 3,131개소

업종	화학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비금속광 물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금속가공 제품 제조업	자동차및 트레일러 제조업	전자통신 장비 제조업	기타 11개 업종
업체수	498	426	396	328	273	257	257	696
비율(%)	15.9	13.6	12.6	10.5	8.7	8.2	8.2	22.2

기준실적

- 기준실적(16~ 18년 평균) : 순환이용률 69.16%, 최종처분율 28.51%
- 업종별 기준실적 현황
 - 업종별 순환이용률 26.44% (기타운송장비제조업) ~75.69% (전기가스, 공기 조절공급업)
 - 업종별 최종처분율 24.22% (전기가스, 공기 조절공급업) ~52.28% (섬유제품 제조업)
- 업종별 성과관리대상자 기준실적 분포
 - 업종 중분류 기준에 따른 자원순환 실적이 상중하로 편중되지 않고 고르게 분포

기준실적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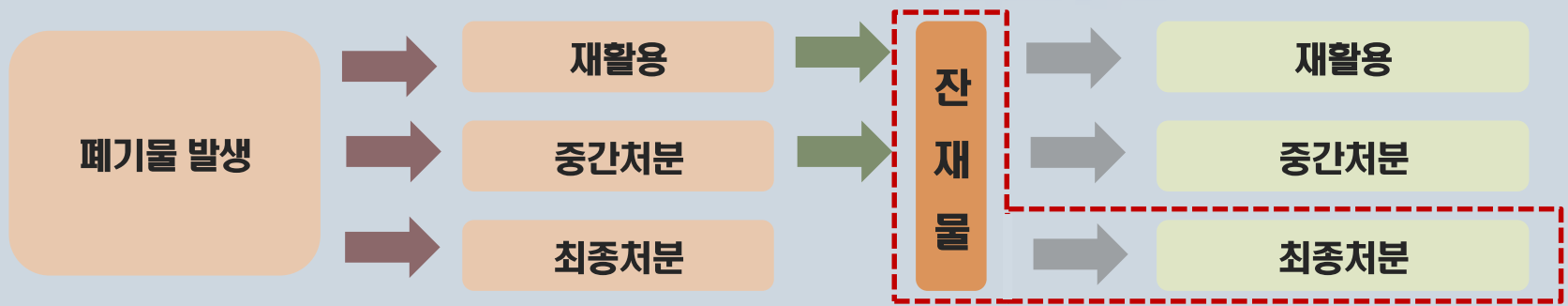
기준실적 산정 근거

- **실적자료** : 성과관리대상자의 기준실적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대상자는 공고연도를 포함한 **최근 3년간 폐기물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과 최종 처분 및 순환이용실적** 등 자원순환 목표설정을 위한 **실적자료를 공고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연도 3월말까지 제출**
 - ☞ 최근 3년간 실적 자료가 없는 경우 2개년도 또는 단년도 실적 자료 제출
- ※ 금번에 한하여, **16~18년 실적자료 작성 시 잔재물 배출계수 우선 적용 가능**
 - ☞ 폐기물관리법 개정 전 실적보고서 양식에 16~17년도 중 자가 처리 또는 중간 처분된 폐기물의 잔재물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정보가 없어 **한시적 적용**
- 잔재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실중량으로 입력하기를 원하는 사업장은 환경부 고시에 따라 작성 제출

기준실적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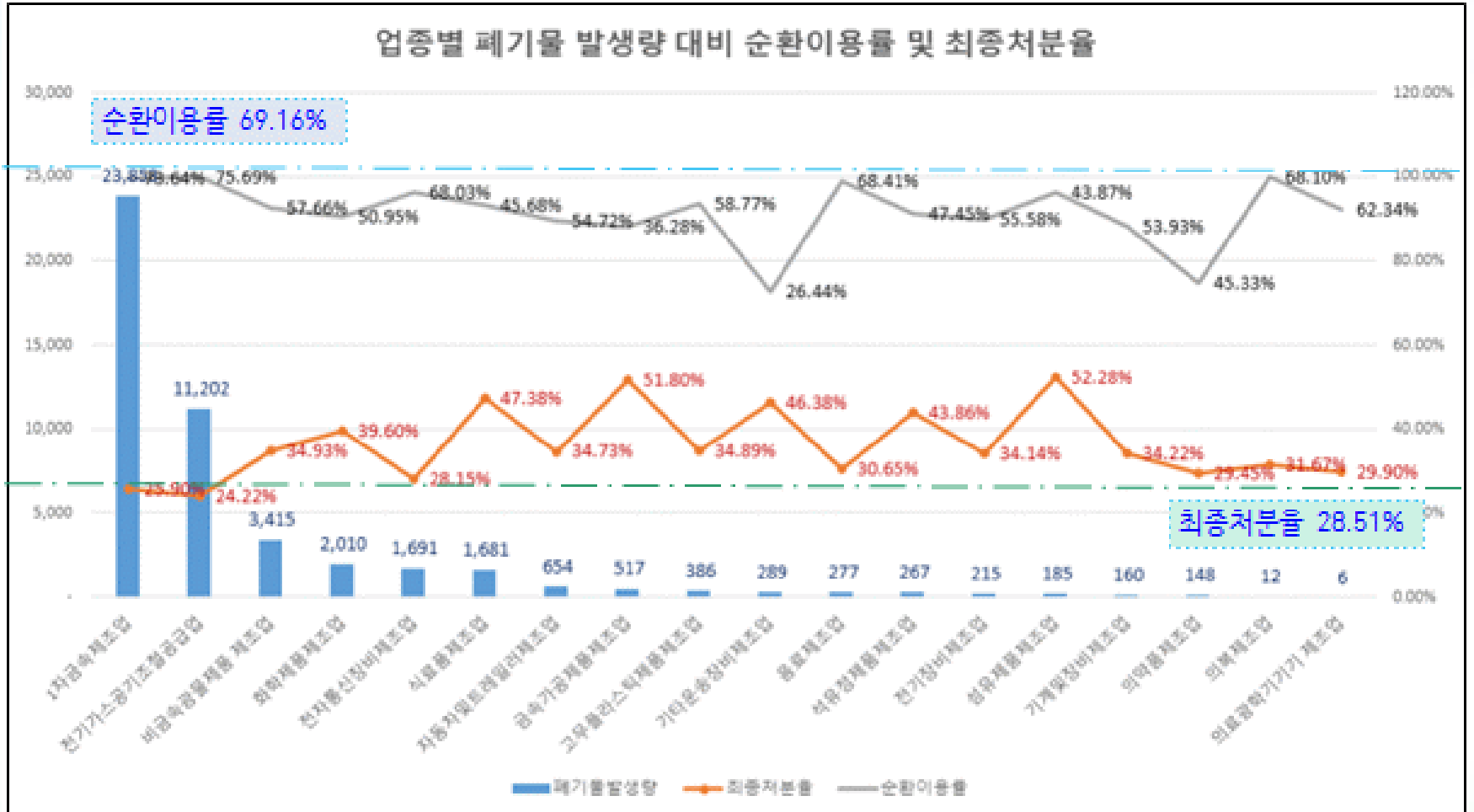
잔재물 배출계수 적용 시 실적 산정방법

- 근거: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 ✓ 잔재물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실적자료를 작성할 경우 **산출된 잔재물이 전량 최종 처분된 것으로 보며,**
- ✓ 당초 잔재물 배출계수 활용 목적이 폐기물 처리업체의 부도 파산 계약해지 등으로 실적 확인 불가 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폐기물 종류별 세부 재활용 유형별 **잔재물 발생량 중 최대값**으로 산정된 바,
⇒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출된 기준실적은 실중량 또는 처리업체 발생비율로 작성 시 **보다 최종처분율이 높게 산정됨**

업종별 자원순환실적



연차별 목표(2020년)

국가목표 및 연차별목표

- ▶ 제도시행 초기 산업계 부담 최소화, 수용성 제고를 위해 과거실적 대비 향상비율 완만하게 설정
 - [순환이용률] 기준실적 69.16% 대비 목표 71.2%(↑ 2.94%)
 - [최종처분율] 기준실적 28.51% 대비 목표 19.66%(↓ 31.06%)

구 분	사업장폐기물 국가목표(27)	연차별목표(20)	기준실적 [16~ 18평균]
순환이용률(%)	83.1	71.2	69.16
최종처분율(%)	3.2	19.66	28.51

※ 최종처분율의 경우 잔재물 배출계수 사용에 따라 **재활용 및 중간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잔재물량이 전량 최종처분량으로 산정***됨을 감안하여 연차별 목표 설정
(*관련 근거: 사업자의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

자원순환 지표별 목표부여(안)

업종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

- ▶ [기달성 사업장별 업종] 사업장 발생 폐기물이 해당 사업장이 속한 세분류 업종의 폐기물 종류별 자원순환 실적(순환이용률, 최종처분율) 평균 이상으로 목표 설정
- ▶ [미달성 사업장별 업종] 전체(달성+미달성) 업종이 20년도 연차별 목표량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 설정

구분	27년 목표	20년 목표	달성여부	기준실적	목표	비고
순환 이용률	83.1%	71.2%	기달성	89.72%	89.72%	유지
			미달성	61.88%	66.23%	평균 4.35%p ↑
최종 처분율	3.2%	19.66%	기달성	1.34%	1.33%	평균 0.01%p ↓
			미달성	29.88%	20.58%	평균 9.3%p ↓

자원순환 지표별 목표부여(안)

업종별 자원순환 목표 설정(예시)

▶ 세분류업종별 순환이용률 목표설정(비교)

업종	기준실적	20년 목표	비 고
[3132]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제 조업	-	-	-
	13.1%	14.02%	0.92%p인상 (7.02%)
[3039]자동차용 기타 신제품 부품 제 조업	88.02%	88.02%	기준실적 유지
	45.69%	48.9%	3.21%p인상 (7.02%)
[2611]전자집적회 로 제조업	-	-	-
	77.62%	83.07%	5.45%p인상 (7.02%)

04 향후 일정 및 질의응답



향후 일정

- 19.10~11 : 자원순환 목표설정 이의신청 및 조정
- 19.11.29. : 사업자별 자원순환 목표 확정 통보
- 19.12.31. : 목표이행계획서 제출
- 20. 1 : 이행계획 검토 및 확인
- 20. 1~ : 2020년도 자원순환 목표 이행

감사합니다

